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약관 목적)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①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②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 ③ 계약기간의 종료 후 수급자가 원할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 ③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본인부담금 6%받고 94%공단으로 청구,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본인부담금 4%를 받고 96%는 공단에 청구 한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4%

(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강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